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5. 30 선고 2023나3975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5. 30 선고 2023나39756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9. 5 선고 2021가단134465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고, 항소인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솔

담당변호사 김빛나, 김필중

변론 종결2024. 5. 16.

판결 선고2024. 5. 30.

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9. 5. 선고 2021가단134465 판결

주문

-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8. 8. 체결된 증여계약은 90,179,04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90,179,0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"2. 추가판단"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1, 2행의 "만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,"를 "만일 C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"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D 또는 원고가 2019. 7. 31.경 또는 2019. 8. 28.경에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

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.』

○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"이 법원의"부터 제3행의 "사실조회결과,"까지를 "제1심법원의 2021. 10. 27.자 대법원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제1심법원의 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, 제1심법원의 2022. 5. 18.자 주식회사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,"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7쪽 제14행의 "각 마친 사실"을 "각 마쳐진 사실"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부터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마) 피고는 C가 수령한 퇴직금 524,127,260원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한다.

을 제5,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, C가 근속연수(1992. 12. 21.부터 2017. 1. 22.까지)에 따라 총 524,127,260원 상당액을 퇴직금(이하 '이 사건 퇴직금'이라고 한다)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고, 그중 75,507,642원은 2009. 2. 12.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았으며, 나머지 448,519,618원은 2017. 2. 3.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나 C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7. 8. 8. 당시에 2017. 2. 3.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48,519,618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』

○ 제1심판결 제10쪽 제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『나) 한편 피고는, C가 원고와 협의이혼을 할 무렵 수령한 퇴직금 524,127,260원도 C의 적극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호증의 기재, 제1심법원의 2022. 11. 16.자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, 피고는 C와 혼인기간 중 2002. 3. 11.부터 2013. 7. 1.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X고등학교에서 지방사무원 내지 지방교육행정서기로 근무하였고,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퇴직연금은 월 1,136,530원인 점, C는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2009. 2. 12. 이 사건 퇴직금 중 75,507,642원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았으며, 2017. 2. 3.경 나머지 448,519,618원을 수령하여

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, C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와 피고가 장래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 액수의 합계가 일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 점, C와 피고의 혼인기간, 나이, 경제적 능력,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, C의 퇴직금과 피고의 퇴직연금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(다만 C의 퇴직금의 액수의 규모를 재산분할비율에서 고려하기로 한다).』

○ 제1심판결 제13쪽 제13, 14행의 "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"를 "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"로 고쳐 쓴다.

2. 추가판단

가.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에 관한 주장

1) C가 수령한 이 사건 퇴직금과 피고의 퇴직연금수급권 관련 주장 가) 피고는, C가 수령한 이 사건 퇴직금을 C의 채무초과상태나 C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, 피고의 퇴직연금수급권도 위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나) C가 협의이혼일인 2017. 9. 11.로부터 약 7개월 전인 2017. 2. 3. 이 사건 퇴직금 중 448,519,618원을 수령한 사실과 피고의 예상 퇴직연금이 월 1,136,5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다)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제1심법원이 이 사건 퇴직금과 피고의 퇴직연금수급권을 반영하지 않고서 C의 채무초과상태나 C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의 상당성을 판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① C가 2017. 2. 3. 수령한 이 사건 퇴직금을 이 사건 협의이혼일인 2017. 9. 17.경에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.

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어느 한쪽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, 부부공동재산의 형성·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위 외에는 인출금을 모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판결례에 따라 C가 수령한 이

사건 퇴직금과 피고의 퇴직연금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(을 제19호증)를 근거로 C와 피고가 2016. 12. 31.경 무렵부터는 사실상 별거하여 왔고, C가 그 이후인 2017. 2. 3. 이 사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,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는 협의이혼 이후에야 거주지를 변경¹⁾ 한 사실이 인정되고,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주장하는 2016. 12. 31.경 이후에도 C가 4차례 출입국을 반복한 점(더구나 중국에서의 체류기간이 모두 두 달을 넘지 않았다)을 고려하면, 피고가 주장하는 2016. 12. 31.경 무렵 또는 C가 이 사건 퇴직금을 수령한 2017. 2. 3.경 C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.

③ 더구나 제1심법원은 C의 퇴직연금은 채무초과상태 판단을 위한 적극재산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면서도, 재산분할협의대상으로서의 적극재산에는 포함시켰고,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C의 이 사건 퇴직금과 피고의 퇴직연금수급권을 모두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도,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기여율을 80%로 산정하였다.

④ 위와 같은 사정에, 피고와 C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C 명의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여 피고 명의의 총 재산만을 증가시킨 점, C가 혼인 관계의 파탄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, 피고의 직업, 피고와 C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는 통상적으로 판단되는 기여율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, 제1심법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의 기여율을 80%로 산정한 것에는 제1심판결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C가 수령한 이 사건 퇴직금과 피고의 퇴직연금수급권을 반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.

⑤ 더구나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,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·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(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), 이는 C의 이 사건 퇴직금과 피고의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반영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률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하여 C가 수령한 이 사건 퇴직금과 피고의

퇴직연금수급권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.

나. 피고의 추가 채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는, 피고가 2016. 5. 27. AA로부터 차용한 45,226,632원도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2) 피고가 제출한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AA이 2016. 5. 27. 피고 명의 계좌로 45,226,632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.

3)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이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거나 설령 피고가 AA에게 45,226,632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·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.

재판장판사장용범

판사김민순

판사이슬아

1) 을 제18호증